



강북구의회
GA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3년 06월 24일
(월요일)

북부신문 4면

강북구 통장 권익향상 위한 개정 조례안 통과

박문수 의원 “통장들에게 실비지급 근거 이뤄지게 돼 기뻐”

강북구의회는 지난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처리했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박문수 의원(운영위원회 위원장·사진)이 발의했다.

개정된 조례는 ▲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을 공사는

50억 원, 물품·용역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▲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단서조항 중 연간단가 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라는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박문수 의원은 “주민참여감독자는 각 공정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·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구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크다”며 “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요공정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금전적인 보상 없이 지역발



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각 동의 통장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실비지급 근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